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09

2023.09.11.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이후 도래할 금융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산업계를 주도할 신산업(로봇·인공지능·바이오 등)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벤처펀드를 운영하고자 함.

○ 이에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는 펀드 출자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추진방향

- 공익성(중소기업 성장 유도)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정부자금(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 후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출자의 필요성

- 미래혁신성장펀드(2019년~2022년/4개년)를 조성하여 차세대 신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성장을 통한 서울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여

서울시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참고-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기업 성과]

(수혜기업) 470개 기업
(매출증대) +1조 2,800억원
(고용창출) +8,236명 ※ 미래혁신성장펀드 도입 시 대비 '22년 말 기준

-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이어 서울 Vision 2030펀드(2023년~2026년)를 확대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서울시 경제성장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고자 함.

다. 서울 Vision 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등 출자 계획

○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투자 → 회수 → 재투자"를 통한 재원 조성의 선순환구조 확립
  -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전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미래 투자수요 보완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펀드 재구조화
  -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혁신기술 분야 펀드 신규 조성
  - ▸市 정책 사업 및 투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투자 추진

○ 2024년 펀드 출자 계획안

- 출자규모 : **702억원**(서울Vision2030펀드+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		내 용	출자액
서울 Vision 2030 펀드	①스케일업펀드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125억
	②첫걸음동행펀드	서울시 정책사업(R&D지원사업 등) 연계 및	50억

		민간시장 투자 소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③디지털대전환펀드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ICT, AI, 빅데이터, 6G 등)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75억
	④창업지원펀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펀드 조성	75억
	⑤서울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50억
	⑥문화콘텐츠펀드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시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50억
녹색기업 창업펀드	⑦녹색기업창업펀드	서울형 7대 녹색산업에 속하거나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8억

※ 2024년도 출자규모에는 서울Vision2030펀드에 앞서 미래혁신성장펀드로 조성하였던 6개 펀드*의 출자 약정액 잔여분(269억원)도 포함

* 4차산업혁명펀드, 스마트시티펀드, 재도전지원펀드, 문화콘텐츠펀드, 창업지원펀드, 바이오펀드

※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에 따라 펀드 출자금 변동 가능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이후 도래할 금융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산업계를 주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서울 비전 2030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서울 비전 2030 펀드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펀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1]’으로 각각 분리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하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펀드 관련 자금의 운용을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 등을 합쳐 펀드를 조성하고, 공모로 선정된 전문운용사가 투자대상 기업 발굴, 투자실행, 회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당초 목표였던 1조 2천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3조 9,489억원(시 출자 1,881억원)을 조성·운용 중이며, 이 중 119억 1천 1백만원을 회수함.

<2018~2022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투자대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 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292.5	6,006.5
스마트시티 펀드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322.5	5,145.5
문화콘텐츠 펀드	문화콘텐츠 분야 서울 소재 기업 또는 프로젝트	175	3,785
창업지원펀드	창업업력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566	15,300
재도전지원펀드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175	2,948
바 이 오 펀 드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350	6,304
합계		1,881	39,489

1)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2018년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 한편, 2022년에 미래혁신성장펀드의 조성이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2023년부터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였는바,

결성목표액 총 5조원 중 서울시 출자액은 총 3,500억원(연 875억원)으로, 출자재원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 등을 활용함.

○ 그리고 서울시는 투자계정을 통해 서울형 미래 유망기술 및 스케일업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합쳐 5조원의 펀드를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할 예정임[2].

<서울 비전 2030 펀드별 연차별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0,000 (3,500)	10,650 (700)	12,400 (850)	13,150 (950)	13,800 (1,000)
스케일업 펀드	14,000 (1,100)	2,750 (200)	3,250 (250)	3,750 (300)	4,250 (350)
첫걸음동행 펀드	2,500 (500)	500 (100)	500 (100)	750 (150)	750 (150)
디지털대전환 펀드	10,000 (600)	2,000 (100)	2,500 (150)	2,500 (150)	3,000 (200)
창업지원 펀드	10,000 (550)	2,000 (100)	2,500 (150)	2,500 (150)	3,000 (150)
서울바이오 펀드	7,500 (400)	1,900 (100)	1,900 (100)	1,900 (100)	1,800 (100)
문화콘텐츠 펀드	6,000 (350)	1,500 (100)	1,750 (100)	1,750 (100)	1,000 (50)

○ 조성되는 펀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정부모태펀드를 활용한 펀드투자의 경우, 조성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을 기준으로 펀드 운용기간을 8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대상 기업의 상장 등 엑시트(exit) 여건에 따라 투자자금이 조기 회수되거나 지연회수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제 펀드 운용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신규) : 대・중견기업 등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과 우수한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함(1조 4천억원).

- 창업지원(재도약, 신규) : 경제위기 등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스타트업과 기술력・경험을 갖춘 재창업기업을 지원함(1조원).

- 디지털대전환펀드(신규) :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투자함(1조원).

- 첫걸음동행펀드(신규) :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유망 기업 등과 민간 벤처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유망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함(2천 5백억원).

- 문화콘텐츠펀드(유지) : 서울문화콘텐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망 스타트업과 DMC 및 서울시 창업보육시설 내 문화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에 적극 투자함(6천억원).

- 서울바이오펀드(유지) : 코로나 시대를 통해 성장한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를 이어감(7조 5천억원).

다. 출자의 타당성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서울비전 2030 등의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함.

○ 또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면서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펀드투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동 출자 동의안은 서울비전 2030 연차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2024년 출자약정액 850억원 중 실제 출자요청이 예상되는 425억원과 미래혁신성장펀드 출자약정액 잔여분 269억원, 녹색기업창업펀드 출자분 8억원[3]을 반영한 총 702억원을 출자 규모로 제시하였는바,

---

3)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조성·운용 중인 녹색기업창업펀드의 제5호 펀드의 조성을 위한 자금 20억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4년에 투자해야 할 자금 8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예치 중인 녹색기업창업펀드 3호 투자회수금을 활용한 것임.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서울비전 2030 펀드의 연차별 조성계획의 50% 수준만 반영되었으므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실제 펀드결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209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이후 도래할 금융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산업계를 주도할 신산업(로봇·인공지능·바이오 등)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벤처펀드를 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는 펀드 출자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나. 추진방향

- 공익성(중소기업 성장 유도)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정부자금(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 후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다.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마. 출자의 필요성

- 미래혁신성장펀드('19년~'22년/4개년)를 조성하여 차세대 신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성장을 통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4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여 서울시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참고-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기업 성과〕

(수혜기업) 470개 기업
(매출증대) +1조 2,800억원
(고용창출) +8,236명 ※ 미래혁신성장펀드 도입 시 대비 '22년 말 기준

-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이어 서울 Vision 2030펀드('23년~'26년)를 확대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서울시 경제성장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고자 함

3. 서울 Vision 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등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투자 → 회수 → 재투자"를 통한 재원 조성의 선순환구조 확립
  ‣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전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미래 투자수요 보완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펀드 재구조화
  ‣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혁신기술 분야 펀드 신규 조성
  ‣ 市 정책 사업 및 투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투자 추진

나. '24년 펀드 출자 계획안

- 출자규모 : **702억원**(서울Vision2030펀드+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		내 용	출자액
서 울 Vision 2030 펀 드	①스케일업펀드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125억
	②첫걸음동행펀드	서울시 정책사업(R&D지원사업 등) 연계 및 민간 시장 투자 소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50억
	③디지털대전환펀드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 (ICT, AI, 빅데이터, 6G 등)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75억
	④창업지원펀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펀드 조성	75억
	⑤서울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에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50억
	⑥문화콘텐츠펀드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시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50억
녹색기업 창업펀드	⑦녹색기업창업펀드	서울형 7대 녹색산업에 속하거나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8억

※ '24년도 출자규모에는 서울Vision2030펀드에 앞서 미래혁신성장펀드로 조성하였던 6개 펀드*의 출자 약정액 잔여분(269억원)도 포함

* 4차산업혁명펀드, 스마트시티펀드, 재도전지원펀드, 문화콘텐츠펀드, 창업지원펀드, 바이오펀드

※ '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에 따라 펀드 출자금 변동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 1. 벤처투자조합
> 2. 모태조합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고성한 (☎2133-5234)